

2021 대구·경북지역 온라인 **지원사업 설명회**

-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목 차

- ① 예비창업패키지
- ② 초기창업패키지
- ③ 창업도약패키지

⚠유의 사항⚠

- 본 안내자료는 2021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별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사업신청 및 접수, 평가 등 상기 사업의 관련된 모든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를 따름

STEP 1 창업준비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모



(’21년) 1,002.4억원, 1,530팀 내외 / 3월 공고 예정

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업종 무관)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 과거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나이 제한 없음
-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STEP 1 창업준비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평균 51백만원)

*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여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창업활동비 등에 사용 가능

- 예비창업자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운영

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
협약체결 전	협약진행 중	협약진행 중
사업 운영 기준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아이디어 보완 및 BM 구체화 등 이론 중심의 기초교육 및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마케팅·투자·브랜드 개발·시장조사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

- 창업·경영 전문가인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경영 자문 서비스 제공
- 보증·투자·판로·네트워크 등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참여 가능

STEP 2 창업초기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규모



(’21년) 1,002억원, 960개사 내외 / 3월 공고 예정

대상



창업 3년 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 ①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 가능

- ②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지만 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에도 창업하였을 경우 ⇒ 공고문의 신청 가능한 경우와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확인 요망

STEP 2 창업초기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원)

*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여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에 사용 가능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예 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억원	7,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00%	70%	10%	20%

2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 : 아이템 실증검증, 투자연계 등 지원

STEP 3 창업도약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 창업도약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고도화, 특화프로그램 등 사업화 지원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규모



(’21년) 1,020억원, 1,080개사 내외 / 3월 공고 예정

대상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 공고문의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확인 요망

ex)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

STEP 3 창업도약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내용

- 사업모델(BM)개선, 아이템 검증·보강 등 “매출증대” 및 “시장진입·검증”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3억원 지원(협약기간: 10개월 이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예 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42,900만원	30,000만원	4,400만원	8,500만원
100%	70%	10%	20%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성장지원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

STEP 3 창업도약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내용

- 성장촉진 프로그램(디자인 개선, 성장촉진 등)별 지원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예 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143만원	1,500만원	215만원	428만원
100%	70%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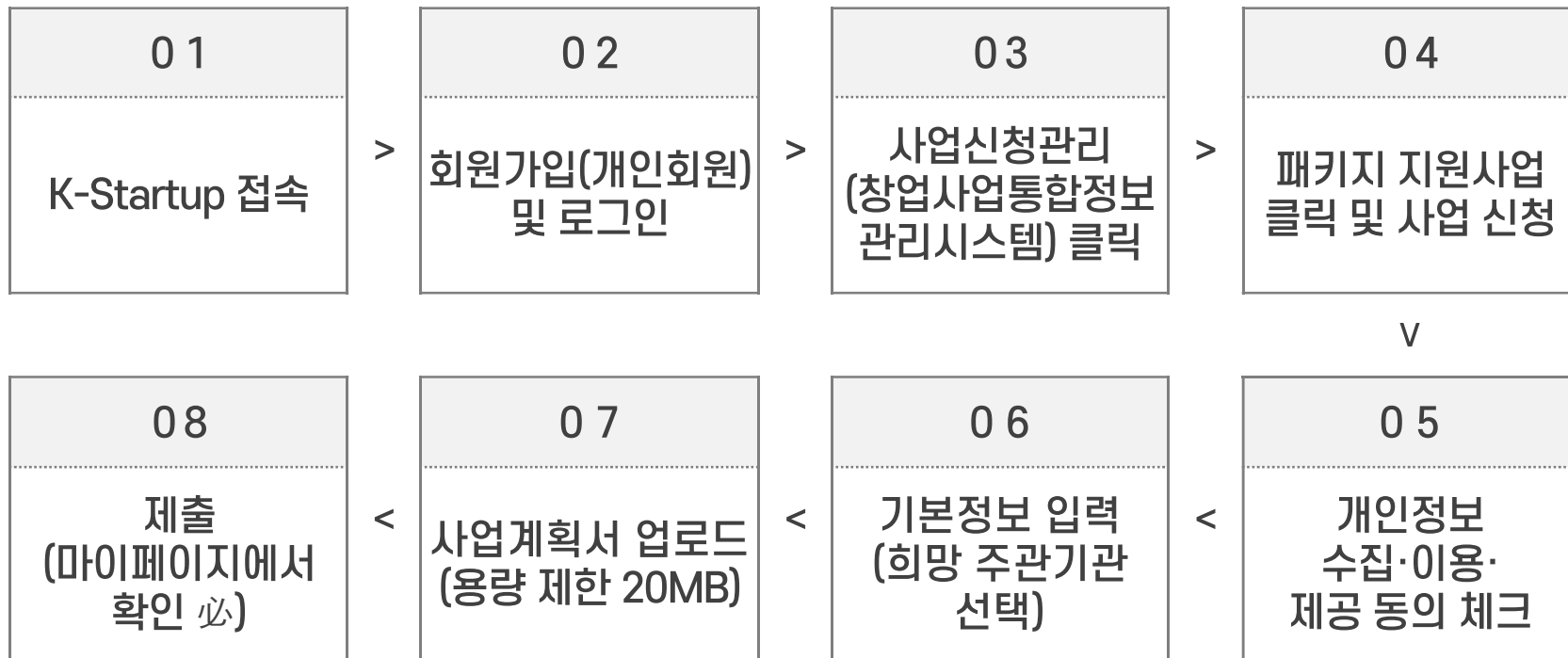
-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수수료,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자금 지원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

참고1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마감일 2~3일 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마감 이후 신청 불가)

선정절차

- 제품·서비스 개발동기/개발방안,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

요건 검토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여부 검토
(창업진흥원)



서류 평가

기술·시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시장성 평가
(주관기관)



발표 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 역량,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주관기관)



최종 선정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

참고3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비 비목(20년 기준)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SW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 사업 수행을 위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에 대한 보수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운반비, 보험료, 법인설립비(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시), 회계감사비 / 기자재 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보관료
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타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포함)

주요 신청 제외대상

※ 상세 내용은 지원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 요망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사업별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사업별 공고문 참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감사합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설명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